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. 10. 10 선고 2024가단70773 판결 [건물 명도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9. 12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
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5,600,000원과 2024. 6. 5.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,4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박무영

별지